

202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http://globalator.kr/>

** 검색포털에서 “aT수출지원”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쉽게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북 내용은 '20년 3월 기준 내용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합니다.

**** 가이드북 내용은 농식품수출정보사이트(<http://www.kati.net/>)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Contents

Part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01
Part 2	수출품목육성·발굴	07
Part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5
Part 4	통관 및 물류지원	19
Part 5	현지 유통망 개척	31
Part 6	수출 지원 자금용자	45
Part 7	참고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202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Part
0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 | | | |
|----|----------------|----|
| 01 | 농수산물수출정보(KATI) | 2p |
| 02 | 수출컨설팅 | 3p |
| 03 | 현지화 지원 | 4p |
| 04 | 전문인력양성 | 5p |



01 농수산물수출정보(KATI)

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농수산물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등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

지원내용 ●기본이용 카테고리

구분	서비스내용
뉴스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정보
품목	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제공
국가	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제공
제도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인증, 첨가물 등
자료	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스토리뉴스, 동영상 등
통계	월별,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통계정보

●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업체 희망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제공

- 타깃시장/ 경쟁력/ 소비자조사 3항목 맞춤형 조사결과 무료 제공

이용방법 ●농수산물수출정보 KATI

- 홈페이지 및 모바일 : www.kati.net
- SNS 채널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8KATI, (카카오톡 ID) kati

●해외시장맞춤조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신청

**추진현황
계획**

- 최신 수출정보 One-stop 제공
- 통관문제사례 DB구축 및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국가별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대상 해외시장맞춤정보 지원

담당부서

●KATI 홈페이지 이용

aT 수출정보분석부 강은혜 대리(061-931-0879)

●해외시장맞춤조사

aT 수출정보분석부 김해나 주임(061-931-0875)

02 수출컨설팅

국내 농식품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도모

지원대상 국내 농가,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수출업체(단, 수산식품 제외)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해외 진출 컨설팅	· 컨설팅사-개별기업간 장기 컨설팅 수행 ① 수출초보기업(수출실적 5만불미만) ② 시장다변화기업(수출실적 5만불이상) - 지원항목 (필수) 바이어 발굴, 실무교육, 시장조사 (선택)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물, 인증 등	[장기 8개월 내외] 컨설팅 비용 80% 정부지원 (최대 24백만원 한도) * 단, 연속국가지원시 2년차 70% 3년차 60% 지원으로 차등
현장 코칭	· 전문위원-기업 간 단기 컨설팅 수행 -코칭 분야: 해외마케팅, 상품화, 라벨링/포장, 생산/품질관리, 물류 효율화, 금융/보험 통관검역 등	[단기 5일~10일 방문 코칭] · 업체자부담금: 10~60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최근년도 매출 1.5억 미만 기업 자부담 면제 · 통·번역 및 홍보물 제작: 80% 지원(2백만원 한도)
FTA 특혜 관세 활용	· 관세법안-개별기업간 컨설팅 수행 ① FTA종합컨설팅('21년 체결국 수출 예정 또는 '19~'20년 체결국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간접수출포함) ② FTACI당돌컨설팅(수출초보기업) · 업체별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컨설팅 수행 - 관세 실익 분석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 대행/지원 · 농식품분야 FTA 상담 애로창구 운영(수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지원 범위 포함	[업체당 3~8일 컨설팅] · 95업체 내외 지원 · FTA종합컨설팅 8회 · FTACI당돌컨설팅 3회 · 자부담금 없음
역량 진단	·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 자가역량진단 ·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재무상태, 인력, 제품역량 등 항목별 현황을 분석하여 수출기업 맞춤지원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필수]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내 온라인 자가역량진단기능

● 해외진출컨설팅

접수 ▶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서 작성 ▶ 현장점검 ▶ 수행계획심의 ▶ 자부담금 납입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정산 ▶ 컨설팅 완료 ▶ 완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현장코칭

접수 ▶ 업체선정 ▶ 자부담금 납입 ▶ 전문위원 매칭 ▶ 현장코칭 수행 ▶ 만족도 조사

● FTA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신청 ▶ 서류심사 ▶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완료 ▶ 사후관리

이용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윤소라 주임(061-931-0867)
문소영 주임(061-931-0868)

03 현지화 지원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대상지역**: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34개국(전문기관 107개소)
 - (동북아)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일본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니, 라오스, 미얀마, 인도, 말련, 싱가포르, 필리핀
 - (미 주) 미국, 캐나다(유 럽) EU,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 (중앙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 (중 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터키

● **지원방법**: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인도	자부담	대상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 현지 법률·통관(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10	-	수출업체 바이어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지원(자문)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법률일반</td> <td>계약서 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무법률 등</td> </tr> <tr> <td>통관</td> <td>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td> </tr> <tr> <td>SPS</td> <td>식품 관련 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td> </tr> </tbody> </table>				분야	지원(자문)내용	법률일반	계약서 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무법률 등	통관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SPS	식품 관련 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
	분야				지원(자문)내용							
	법률일반				계약서 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무법률 등							
통관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SPS	식품 관련 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											
· 수출제품 라벨링 샘플 제작(등록) 지원	20	10~20%	수출업체									
· 라벨 제작에 필요한 성분 검사												
상표권원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대행	10	10~20%	수출업체								
포장지현지화	· 현지 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20	10%									
바이어특화지원	· 바이어 코칭 및 컨설팅(美 FSVP 등) ·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 현지 식품 검사비 등	20	10%	바이어								
수입경해제 컨설팅	· 미국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20	10%									
One-stop 시험수출	· 시험수출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물류·보관,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제반사항 일괄 지원 * 지원국가 추후 확정	10	10%	수출업체								

* 현지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용방법

- **지원기간**: 3~11월(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모집공고**: aT 홈페이지(at.or.kr), KATI(kati.ne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신청방법**: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사업안내 → 《현지화지원사업》 * 신청 매뉴얼 참고

담당부서

- (농식품) aT 수출정보분석부 김가령 대리, 김승현 주임 (hjh@at.or.kr, 061-931-0872, 0877~8)
- (수 산) aT 수산수출부 김주식차장(061-931-0852), 이승연 대리(061-931-0854)

04 전문인력양성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한 농식품 특화 무역실무 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식품 분야 수출 전문가 육성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관련 종사자, 수출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지자체 수출 담당 공무원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해외진출컨설팅

교육명	농식품 수출마스터 교육		농식품 수출 지원역량 강화
교육기간	7.27~12.9 / 총151시간 매주 수요일 13:00-18:00 19주 (현장견학 2회, 국외연수 1회 포함)		5.24~5.26
교육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지자체 수출담당 공무원
교육내용	무역실무	무역절차, 서식·규범, 포장 및 라벨링, 검역·통관·인증 등	수출진흥정책, 무역실무, FTA의 이해, 바이어 유인 노하우 등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온·오프라인), 주요 수출시장 진출전략 등	
	해외연수	국제식품박람회 부스운영,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토론수업	현장 문제점 토의 등	
교육형태	합숙 / 비합숙 병행		비합숙
교육인원	25명 내외		25명 내외

이용방법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cat.or.kr)접속 → 회원가입 → 해당 교육과정 신청

담당부서 aT 농임산수출부 : 임수진 대리(061-931-0826)
농식품유통교육원 : 김경화 차장(031-400-3568)

202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Part 02

수출품목육성·발굴

- | | | |
|----|-------------|-----|
| 05 | 수출통합조직 육성 | 8p |
| 06 |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 9p |
| 07 | 수출상품화 지원 | 10p |
| 08 |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 12p |
| 09 | 우수농식품패키지지원 | 13p |



05 수출통합조직 육성

신선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수출통합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한 수출통합조직
-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지원을 통해 수출협의회 및 선도조직 등의 수출통합조직화 지속 유도 (20 지정:배)

신청요건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3/5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지원내용

-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운영실적 평가결과 득점률 반영 (차등지원)

(단위:백만원)

구분	수출통합조직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품목조직별 수출 규모	3/5 (67%)~75%	75~90%	90%~
3천만불초과	250	500	1,000
1천만불초과	125	315	625
1천만불이하	100	185	315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직전2개년 물류비 기준 × 등급별 차등 비율 적용

구분	수출통합조직		
	일반	우수	최우수
수출활성화	10%	12%	14%

- 수출안정화인센티브: 신규지정 1년차 3억, 2년차 1.5억원
- 품목의 국가전체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하인 경우: 최대 1억원

진행절차

- **지원기간:**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21년 수출통합조직 운영지침」참고
- **신청방법 및 모집시기:** 별도공고

* aT 홈페이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KATI에서 조회 가능

담당부서

aT 농임산수출부 장정호 차장(061-931-0821)
임형렬 대리(061-931-0825)

06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지원

지원대상 수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선도조직(개별, 연합) (*20자정: 키위, 마늘)

신청요건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지원내용

-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 운영실적 평가결과 득점률 반영(차등지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 2/3(67%)	2/3 ~ 75%	75 ~ 90%	90% ~
3천만불초과	70	90	150	200
1천만불초과	60	80	100	120
1천만불이하	40	60	80	100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직전2개년 물류비 기준 x 등급별 차등 비율 적용

구분	수출선도조직					
	개별			연합		
	일반	우수	최우수	일반	우수	최우수
수출 활성화	2%	3%	4%	3%	5%	6%

진행절차

- **절차:** 수출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21년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참고
- * aT 홈페이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KATI에서 조회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제출(aT)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수출선도조직 운영위원회) → 수출선도조직 선정(aT)·승인(농식품부) 통보 → 사업추진
- 신청방법 및 모집시기: 별도공고

담당부서 aT 농임산수출부 장정호 차장(061-931-0821)
임형렬 대리(061-931-0825)

07 수출상품화 지원 ① 상품화 지원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대상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 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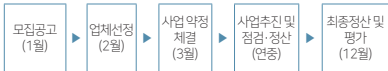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역	비고
1 단계	· 상품개발 · 개선 및 마켓테스트비용 - 지원비율: 80%, 지원한도: 40백만원	-
2 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 지원비율: 80%, 지원한도: 60백만원	※ 2020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신청기준

- 서류전형 → 계량평가(2배수) → 상품성·수출업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100점):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비계량평가 대상업체 선정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20점): 해외지사 평가
- 공개발표평가(비계량, 80점):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

진행절차



모집시기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 신청

담당부서 aT 식품수출부 전홍섭 차장(061-931-0741)
원소현 대리(061-931-0748)

②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UN 및 해외 조달시장 내 식품 및 연관 산업류 진출 지원으로 수출 활로 확대

지원대상 식품 및 종자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제조업체 및 관련협회,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협업체를 구성한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규개발 상품: 조달시장의 기존 주력 품목을 한국의 가공 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개발, 기존 주력 품목을 대체할 목표로 개발 가능한 품목(2차년)

* '20년도 기 지원 신규개발 상품 限: 영양강화쌀, 슈퍼시리얼

- 일반상품: 수출을 하고 있거나 내수 상품으로 성분이나 기능 변경 없이 국제 조달 시장으로 바로 진출이 가능한 품목

* 예시: (식품) 설당 등 (농산업) 종자 등

● 지원항목

구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지원항목
신규상품 개발 (2차년)	【상품개발】 30백만원	100%	제품개발, 인증취득, 상품제안, 시제품제작 비용
일반상품 진출지원	【컨설팅】 20백만원	100%	교육참가, 벤더등록, 상품제안서 작성 입찰등록, 수출상담회 참가 등 * 신규상품개발 지원업체 포함
	【포장개선】 20백만원	90%	납품용으로 포장 개선 (낙찰 시)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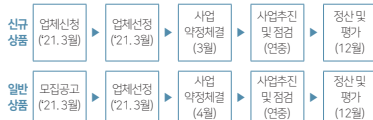
· 서류전형 → 현장 실사(필요시)

- 계량평가(50): 매출액, 수출실적, 인증취득여부 등

- 비계량평가(50): 사업목표, 제품적합성, 국제조달 가능성 등

* 평가점수 및 항목은 지원구분에 따라 변경가능

진행절차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 사업신청 → “2021년 한국농식품 및 연관산업류 UN조달시장 진출 사업” 지원 신청(일반상품 限)

* 신규상품개발(2차년)지원사업은 제외

담당부서

aT 식품수출부 송두류 대리(061-931-0743)

원소현 대리(061-931-0745)

08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국내 기업 농식품 브랜드와 수출 목표국 현지 인지도 높은 스타와의 매칭을 통한 마케팅 집중지원으로 한국 농식품의 해외시장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활력제고

지원대상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 신선농산물, 정부인증 보유,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항
지원 내용	목표국가내 브랜드 등록, 스타 섭외, 콘텐츠 제작,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1.5억 이내 · 지원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중소 80%, 중견기업 70%) · 지원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1~3년차 1억 5천 이내, 4~5년차 1억 이내) · 신규업체,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업체별 차등 배정 가능
지원 업체	15업체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 수산식품, '21년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업체 지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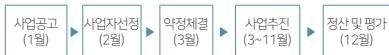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 업체는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선정기준

- 선정방법: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전형: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100점): 계량 40점, 비계량 60점
 - 계량평가(40점): 수출실적,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가점 등 합산 평가
 - 비계량(발표)평가(60점): 사업이해도, 사업계획 적정성, 브랜드 유망성 등
 - 최종선정: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계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대상 1.5배수 내·외에 한정 비계량평가(발표) 실시

진행절차



* 사업추진 기간 내(7~8월) 중간점검 및 중간정산 실시

신청방법

- 모집시기: 매년 2월 경
- 참가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배재운 대리(061-931-0864)

09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초보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패키지 지원

지원대상

최근 3년간(연속)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수산물 수출업체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제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수출 전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15개 사업메뉴) 지원
- 단, 유형별(수출초보패키지 및 수출고도화패키지) 지원메뉴 차등화

단계	사업 기준	사업메뉴	지원한도 (국고보조)
1 수출 초보	① 수출 컨설팅	수출컨설팅 *aT POOL 수출전문인력 양성	10백만원
	② 제품 개발	제품개발(기술도입) 포장 디자인 개발 지적 재산권 출원	60백만원 *포장디자인개발: 30
		③ 수출 준비	해외인증 등록 샘플통관운송 홍보 콘텐츠 제작
【수출초보 패키지】 3개 사업 8개 사업메뉴			100백만원
2 해외 진출	④ 해외 진출 (시장 개척)	현지 시장조사 개별 박람회 참가 개별 바이어 초청	50백만원 *도로나이저자유시선투자금액
		⑤ 해외 판촉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⑥ 수출 확대	미디어 홍보 소비자체험홍보	60백만원 *미디어홍보: 300
【수출고도화 패키지】 5개 사업 13개 사업메뉴			①150 ②270

* 사업메뉴 중 특정 1개 사업의 비중이 배정예산 총액의 5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선정기준

모집 공고	업체 선정	협약 체결	중간 점검	사업 추진	정산 평가
1월	2월	3월	7~8월	3~11월	12월

진행절차

분야	대상자	구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수출초보 패키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1만~10만불 미만 및 국내 매출 10억이상	중소 기업	100백만원	80%
		중견 기업		70%
수출고도화 패키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10만~500만불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중소 기업	150백만원	80%
		중견 기업	270백만원	70%

선정방법

모집공고 → 1차 심사(서류) → 2차 심사(서면) → 3차 현장실사 → 최종선정(협의회)

신청방법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접수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김지연 과장(061-931-0862)

기린아 주임(061-931-0863)

202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Part
03

안정성 및 품질관리 지원

- | | | |
|----|------------------|-----|
| 10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 16p |
| 11 | 안전성조사 | 17p |
| 12 | 선도유지제 지원 | 18p |



10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정부지정 농산물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2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 (단, 임산물 제외)

신청요건 농집 코디네이터(안전성전담관리인력) 지정
 * 정보화우수단지 및 수출전문단지 우대
 * 의무자조금 구성 품목으로 지정받은 단지는 의무거출금 납부 시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농가 인식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품질관리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지원한도: 단지당 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최대 32백만원)

부문	세부지원내역
농가 인식개선	-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경력 등) -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조사, 워크숍 등 - 안전성 전담관리자(개인)의 워크숍 참여 비용 -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농가 정보화	- 단지 내 농가 대상 방문교육, 인내등 임무를 수행하는 지정·등록된 농집 코디네이터(농가도우미) 인건비 - 단지 농가 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 제도 교육 등
전문기술 교육	- 단지 대표품목의 신기술, 신품종 도입 관련 생산현장 컨설팅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 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 신품종 도입 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중요구입(판매 목적 불가)
품질관리 (농가)	- 단지 내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농가 점검·지도 등)
사례전파	- 단지 내 우수 영농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담당부서 · aT 수출기반부 조창식 차장(061-931-0823)
 문지은 주임(061-931-0837)
 · aT 지역본부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40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9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6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628-0334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14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4	제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2

11 안전성조사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가능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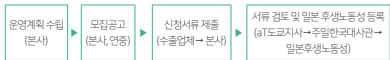
- 지원품목: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對 일본 수출 시 수입식품 의무검사주기 완화 및 수입 시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이용방법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담당부서

● 잔류농약, 식품위생

- aT 농임산수출부 최슬기 주임(061-931-0827)
- aT 각 관할지역본부(p.18 지역본부 연락처 참고)

● 대일수출가공식품사전등록

- aT 식품수출부 박수경 사원(061-931-0745)

12 선도유지제 지원

정부지정 농산물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을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2021.1.1. ~ 2022.1.5. 온라인 신청분까지
- 매월 선적분에 사용한 선도유지제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에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 마감(ex: 1~3월 검사분 4.10일 까지 신청 가능)
*단, 4분기(10~12월) 검사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 검사분에 한해 익년 1.5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혼중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홍보센터>공고>수출사업의 공고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세부사용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담당부서

- aT 농임산수출부 최슬기 주임(061-931-0827)
- aT 지역본부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 지역본부	장혜영	031-8060-6013	전남	광주전남 지역본부	추덕엽	062-940-7015
인천	인천지역 본부	박정현	032-272-3001	경북	대구경북 지역본부	김재은	053-218-4898
강원	강원지역 본부	고동욱	033-920-1544	부산	부산울산 지역본부	임지현	051-947-1084
충북	충북지역 본부	정은화	043-902-9531	경남	경남지역 본부	서영진	055-274-4818
충남	대전세종 충남지역 본부	김현민	042-389-5017	제주	제주지역 본부	김영진	064-746-9472
전북	전북지역 본부	장현미	063-904-5874				

Part 04

통관 및 물류지원

- | | | |
|----|------------|-----|
| 13 | 수출물류비 지원 | 20p |
| 14 |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21p |
| 15 | 해외공동물류센터 | 22p |
| 16 | 콜드체인 구축 | 23p |
| 17 |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 24p |
| 18 | 수출보험지원 | 25p |
| 19 | 해외인증 등록지원 | 28p |



13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10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 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수출 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지자체: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설정
 - 지자체별 지원기준 상이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 * 지원부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원내용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22%를 한도로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7% 이내/수출업체)와 지자체(15% 이내/수출업체+농가분)가 분담하여 지원 * (중앙물류비) 수출통합조직 미가입 시 0%,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1% 지원 - 수출통합조직 품목: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 수출협의회 품목: 배, 사과, 단감, 파프리카, 딸기, 채소종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토마토, 배추(양배추), 포도
내용	· '21.1.1.~'22.12.31. 수출 선적분 지원(B/A 상의 수출선적일 기준) · 중앙정부 월 2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지원액	· 수출물량 × 품목별·국가별·운송방법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22% 이내)

추진절차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 aT 지역본부)

담당부서

- aT 수출기반부 오세원 차장(061-931-0831), 김선주 대리(061-931-0835)
- aT 지역본부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 지역본부	정혜영	031-8060-6013	전남	광주전남 지역본부	박은영	062-940-7030
		김수영	031-8060-6040				
인천	인천지역본부	박정현	032-272-3001	경북	대구경북 지역본부	김재은	053-218-4898
강원	강원지역본부	이정민	033-920-1549	부산	부산울산 지역본부	임지현	051-947-1084
충북	충북지역본부	김상연	043-902-9526	경남	경남지역본부	안보람	055-274-4813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허두혁	042-389-5019	제주	제주지역본부	김영진	064-746-9472
전북	전북지역본부	장현미	063-904-5874				

14 항공공동물류 활성화사업

신선농산물 원거리 항공 활성화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물류비 절감도모

지원대상 신선농산물 수출업체(화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aT와 항공(운송)시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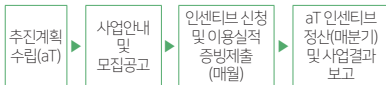
- (항공)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 수출통합조직 결성품목(파프리카, 딸기, 버섯, 포도, 절화류, 배)의 경우 가입업체는 50%, 미가입업체는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천만원

* 수산·임산물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제외

진행절차



추진현황

●운영 품목 및 노선

(‘19) 13품목 110노선 → (‘20) 17품목 349노선

* ‘21 운영노선은 추후 항공사협의 후 확정 예정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수출통합조직의 경우 물류 취합 후 신청 접수

담당부서

aT 신시장개척부 강선영 차장(061-931-0961)
석동우 주임(061-931-0963)

15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 해외물류(보관) 지원을 통한 품질·가격경쟁력 제고 및 신규시장개척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70~90%

● 지원한도

- (계속 지원업체) 업체별 3~60백만원 (신규 지원업체) 업체별 10백만원

*임산의 경우 계속/신규 지원업체 구분 없이 업체별 5~30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해외공동물류센터	냉동·냉장 창고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 계속 지원업체: 업체별 3~60백만원
	상온창고 (청다오 물류센터)	이용료의 50%	* 신규 지원업체: 업체별 10백만원
	도코 복합 물류센터	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	* 임산 지원업체: 업체별 5~30백만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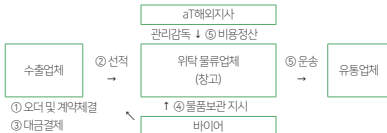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각 관할 해외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진행절차



이용방법



추진현황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정현황: (*20.12) 15개국 72개소

신청방법

● **모집시기**: (상반기) 2~3월 (하반기) 7~8월 중 모집예정

* 시기는 추후 변동가능

● **참가신청**: 각 관할 해외지사

담당부서

aT 신시장개척부 강선영 차장(061-931-0961)

배슬기 주임(061-931-0964)

16 콜드체인 구축사업

냉동·냉장 물류 인프라가 미흡한 중국·아세안시장 내륙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산 신선농식품 시장개척강화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국 칭다오물류센터 및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별 10~80백만원

국가	출발지역	도착지역	지원내용
중국	칭다오물류센터, 중국내 공동물류센터	·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전역 · 공동물류센터, 유통매장 등 운송희망지	냉동·냉장 운송료의 80%
베트남	베트남내 공동물류센터	· 하노이·호치민 등 베트남 전역 · 공동물류센터, 유통매장 등 운송희망지	

선정기준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및 하노이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진행절차



신청방법

● 모집시기

(상반기) 2~3월 (하반기) 6~8월 중 모집예정

* 시기는 추후 변동가능

● 참가신청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및 하노이지사

담당부서

aT 신시장개척부 강선영 차장(061-931-0961)
배슬기 주임(061-931-0964)

17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해외 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 등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를 지원하여 잠재적 수출시장 확대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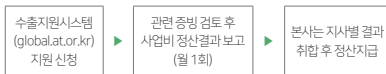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품목: 수출 농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품목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1.1.1.~2021.11.30.
 * 단, 2020.12월 발송분은 소급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접수번호 기준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운송·통관비의 80% (부가세 제외)
 - 국제특송(EMS, DHL) 샘플 발송비 지원 :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시험수출(정식통관) 샘플 송부비 지원 : 국내·외 내륙운송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현지 통관 제비용, 항공(해상)운송비 등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500만원
- **지원조건**: 정상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수출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상(거래구분 92 / 결제방법 GN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국제특송 및 시험수출 모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모두 충족)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최대 4회 인정
 * 연말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제출 요청 시 사업성과 제출

추진절차



모집시기

2021.1.1.~11.30.
 - 수출업체(매월 20일까지 신청) → 지역본부 취합보고(월말) → 익월 지원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성국경 차장(061-931-0981)
 임제연 주임(061-931-0984)
- aT 지역본부 담당자

관할	담당자	연락처	관할	담당자	연락처	관할	담당자	연락처
서울 경기	강해원 과장	031-8060-6055	인천	박정현 대리	032-272-3001	강원	이정민 사원	033-920-1549
충북	김낙권 차장	043-902-9525	대전 세종	김현진 대리	042-389-5017	전북	전유현 차장	063-904-5873
광주 전남	박은영 주임	062-940-7030	대구 경북	김재은 대리	053-218-4898	부산 울산	임지현 과장	051-947-1084
경남	서영진 차장	055-274-4818	제주	김영진 대리	064-746-9472	-	-	-

18 수출보험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 항목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 대상	일반형, 범위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선적 후, 농수산물패키지 및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비율	가입보험료의 95%	가입보험료의 90% * 단, 단체보험은 100%
지원 한도	80백만원 한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 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
 - 단, 단체보험의 경우 aT에서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업체 자부담 없음
 - 단체보험은 매월 global.at.or.kr을 통해서 상시 모집

담당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 고객센터 대표전화: 1588-3884
- aT 농임산수출부 최슬기 주임(061-931-0827)

[참고]

환변동보험 종류

구분	내용	특징
일반형	<p>일반선물환 (Forwa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하락 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보험금) 지급하고,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환차익(환수금) 납부 - 보험금: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보장환율 < 결제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나,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부담 - 통화: USD, JPY, EUR, CNY - 조기결제 가능
	<p>범위선물환 (Range Forwa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범위까지는 환위험에 노출되나 일정환율 이하로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시 환수금 납부 * 보상시작환율: 보장환율-10/-20/-30 * 환수시작환율: 보장환율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일반선물환과 동일한 수준이나 일정범위 환위험 노출 - 통화: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옵션형	<p>범위제한 선물환 (Coll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에 따른 보험금과 환율상승 시의 환수금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시 100% 헤지가 불가능하나, 환율 상승 시 손실이 제한되는 장점이 있음
	<p>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 (Put Spread O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최대 외화당 20~80원 한도 범위내),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상승 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p>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 (Put O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전액 보상),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상승 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환변동보험 지원비율은 모두 가입보험료의 95%로 동일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의요망

[참고]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개요

- 구 성: 기본계약과 선택계약
- 계약기간: 1년
- 가입대상: 농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보상금액: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사항

상품별 설명

구 분	기본계약	선택 계약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발생 위험
책임금액	1억원 ~ 3억원 (1백만원 단위로 선택)	1백만원 ~ 1천만원 (1백만원 단위로 선택)	1천만원 ~ 5천만원 (1백만원 단위로 선택)
보상요건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명령	수입자의 클레임 제기
보상내용	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훈증 및 폐기 비용 보상	클레임 처리비용 (조사, 소송 등)
보험요율 무신용장	신용장거래 0.3% 무신용장 2.0%	4%	0.7%
보상액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	소독 및 폐기 비용	품질조사비 및 중재, 소송비 100%, 재수입 또는 전매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구 분	내 용
대상업체	- '20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이 USD30백만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 수출자가 공사 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책임금액	- USD5만(중소기업 보상비율 95% / 중견기업 보상비율 90%)
보험기간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개 수입자의 거래는 제외 - 가입신청서 제출하였더라도 보험공사가 정한 보험계약 제한대상자에 해당시 가입 제한 가능

19 해외인증등록지원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 * 한식업, 지자체, 중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중복지원불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을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인증제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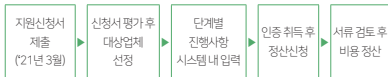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 (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

*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중정산 확정금액) 70%	인증취득비 - 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 -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추진절차



신청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 aT 관할지역본부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aT지역본부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본사 보고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배재운 대리(061-931-0864)

①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소개

개요

-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물식품을 의미
-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
-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저장·판매·처리·보존 과정상 돼지고기와 접촉한 식품, 모든 생물의 피 및 배설물, 주류성분이나 중독성분 함유제품 등

보급현황

- 할랄시장의 매출규모는 '14년 13,9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전세계 인구의 19억 명, 2030년 전세계 인구의 22억명으로 증가할 전망
- 할랄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비무슬림인 사이에서도 인기 상승
- 네덜란드의 할랄 쿠키·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인

국가별 할랄인증

- **인도네시아 : BPJPH**
 - '19.10.17부터 신규 법령이 시행되어 할랄 인증기관이 민간기관 (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으로 변경됨
 - 식품인증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 예정
 - 품목별 400만원~2,000만원 / 4~6개월 소요(품목, 인증기관 등에 따라 상이)
- **말레이시아 : JAKIM**
 - 할랄 로고 개발 및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부기관 JAKIM은 12년부터 말레이시아 유일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지정됨
 - 할랄 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
 - *13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 개발부)이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함
- **싱가포르 : WAREES(MUIS)**
 -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기반으로 할랄 식품에 대한 심사 진행
 -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기관인 Warees Halal 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 업무 담당

해외 발급기관

국 가	발급기관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
말레이시아	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슬람종교위원회(MUIS)

② 코셔(Kosher) 인증 소개

개요

- ‘코셔(Kosher)’란 히브리어로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유대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란 의미로 사용됨
- 코셔에 해당하는 육류와 가금류는 반드시 규정된 방식대로 도살하여야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생산 또는 섭취 불가
- 코셔 인증이란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통해 특정 식품의 코셔 기준에 부합 여부를 가리는 제도

보급현황

- 코셔 인증 소비자 : 유대인, 무슬림, 제7안식교인, 웰빙 추구 소비자
- 전세계 유대인 수 : 약 1,350만명(이스라엘:576만명 / 미국:528만명 추정)
- 무슬림 또한 코셔 식품을 먹을 수 있어 20억 무슬림 인구가 잠재시장으로 추정
- 전세계적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셔 식품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식재료로 인식됨

인증 취득절차

●인증기관


- 수백 개의 코셔 인증기관 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 중 OU마크가 전체 코셔 제품의 70~80% 차지

*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 세계적 식품기업 OU마크 선택

●인증종류

- 제품 종류에 따라 OU(우유, 육류 비포함), OU-D(유제품), OU-M (육류) 등으로 구분

●인증 절차 및 마크

인증 절차	인증 로고
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 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	

- 소요기간: 평균 3개월 소요

소요비용

\$7,000

Part 05

현지 유통망 개척

- | | | |
|----|--------------------------|-----|
| 20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32p |
| 21 | 바이어 거래알선 | 35p |
| 22 | 해외안테나숍(Antenna Shop)설치지원 | 38p |
| 23 |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 39p |
| 24 | Global K-Food Fair | 40p |
| 25 | 해외판촉행사 지원 | 41p |
| 26 | 온라인모바일마케팅 | 42p |
| 27 |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 44p |



20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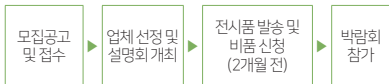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역량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해외식품 전문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한국관내 1부스 무상제공 *채재비 등 직접 지원 없음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 비율	지원 한도	비 고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내 1부스 무상제공
	대기업	50%		
장치비	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내 1부스 무상제공
	대기업	50%		
(기본비품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
	대기업	50%		
운송통관비/냉장(냉동)비품임차비	중소기업	100%	300만원	신선농산물 최대 300만원 가공식품 최대 100만원 *대기업은 지원 제외
기타	한국 농식품 미개척 시장 박람회 한정 1~3업체당 1명 지원 *지원대상박람회(브라질, 폴란드, 카자흐)는 반기별 모집 공고문에 별도 표기			

추진절차



추진현황 및 계획

- 연 2회
- '21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2분기), '22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4분기)

신청방법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국제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성국경 차장(061-931-0981)
오송은 대리(061-931-0985)

[참고] '21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1	GULFOOD	UAE/두바이	2.21~2.25
2	Foodex Japan	일본/도쿄	3.9~3.12
3	World Food Poland	폴란드/바르샤바	4.20~4.22
4	APAS Trade Show	브라질/상파울루	5.17~5.20
5	SIAL China	중국/상하이	5.18~5.20
6	Natural Product Expo West	미국/애너하임	5.24~5.27
7	Thaifex Anuga ASIA	태국/방콕	5.25~5.29
8	FOOD TAIPEI	대만/타이베이	6.23~6.26
9	MIFB	말련/쿠알라룸푸르	7.28~7.30
10	HKTDC Food Expo	홍콩/홍콩	8.12~8.14
11	Fine Food Australia	호주/시드니	9.6~9.9
12	SIAL CANADA	캐나다/토론토	9.21~9.23
13	World Food Moscow	러시아/모스크바	9.21~9.24
14	Summer Fancy Food Show	미국/뉴욕	9.27~9.29
15	Asia Fruit Logistica	홍콩/홍콩	9.28~9.30
16	Anuga	독일/켈른	10.9~10.13
17	FOODEXPO QAZAQSTAN	카자흐스탄/알마티	11.3~11.5
18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중국/상하이	11.5~11.10
19	SIAL Interfood	인니/자카르타	11.10~11.13
20	FEV	베트남/호치민	11.17~11.20

* 위 참가계획은 '21.2월 기준이며 주최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②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개요 공사가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에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지원한도	· 최대 500만원/1회 (지원비율 90%)
	지원기간	· '21.1.1. ~ '21.11.30. 중 추진된 박람회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전시품 운송통관비 *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체재비는 미지원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내 지원

추진절차



- 소요비용**
- **현황:** 연간 320회 수준
 - **계획:** '21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8월)

신청방법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국제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신청

- **선정심사기준:**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성국경 차장(061-931-0981)
오송은 대리(061-931-0985)

21 바이어 거래알선

①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해외 aT지사 및 재외공관 추천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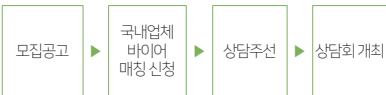
지원대상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지원내용

- (수출업체)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 상담회장 내 상담부스 제공 및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
- (바이어)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통역비 등

지원절차



* '상담주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

모집시기

'21. 8월(예정) * 연 1회(10월) 추진예정이나, 필요시 상·하반기 2회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바이어초청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상담으로 대체될 수 있음

신청방법

aT 바이어매칭시스템(<http://bms.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상담회] → 2021대규모 수출상담회(BKF)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사업신청]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유은정 과장(061-931-0982)
김나미 주임(061-931-0986)

②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제외
- ※ 수산물 수출업체,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지사 초청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수출업체 당 1명의 바이어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항공료: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실비

- 숙박비: 100만원 이내 실비(1박 20만원 한도)

- ※ 코로나19로 국내방문 시 체류기간의 장기화 수요를 반영하여 숙박비 한도 상향조정

추진절차



모집내용

● 모집시기: 2021년 2월 ~ 11월 15일

*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요건

- (수출업체) 1개사 1회 신청 가능
- (바이어) 연간 초청 이력 2회 초과시 정산 불가
- (신청기한) 바이어 귀국일 기준 6주 이내 사업신청

* '21년 1월 초청 완료 건은 사업모집 공고(2월 초) 게시일 이후 6주 이내 신청

* 10월 말 ~ 11월 초청 건의 경우, 11월 15일 이전 접수 건에 한하여 정산

신청방법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1 개별업체 바이어초청사업 모집공고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성국경 차장(061-931-0981),
오송은 대리(061-931-0985)

③ 온라인·모바일 수출상담회 지원



수출업체와 해외 유망바이어 간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수출상담회 지원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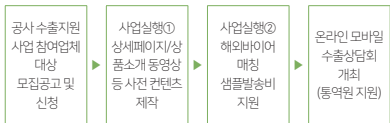
- 농식품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
- 공사 수출지원사업(박람회, K-FOOD Fair, 프런티어 등) 참가자 우선지원
 - aT해외지사, 농업관련 협단체 등과 협의하여 대상 확대 가능

지원내용

바이어 섭외/알선, 웹상세페이지 제작, 샘플배송 지원, 통역원 지원, 상담장 이용 등 온라인상담회 관련 종합지원

*매칭된 바이어에게 실수출 시는 온라인 판촉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및 기타 지원사업 연계 확대 검토

추진절차



모집시기

연중 수시 (aT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우선)

*대상 선정 필요시,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공고

신청방법

지원대상 업체별로 aT 담당자가 직접 연락 및 신청서 양식 전달 → 신청서 양식 이메일 회신 (buyer@at.or.kr)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유은정 과장(061-931-0982)
김나미 주임(061-931-0986)

22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로드숍, 스텝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 밴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대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사항**: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사식, 마케팅 등 운영 비용의 70~90%
 - 신규 품목 입점성과 등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 K-FRESH ZONE 80~90% 지원, 안테나숍은 평가를 통해 70~80% 차등 지원
 - 운영기간, 사업 및 수입의무액, 마켓테스트 횟수 등 의무사항 미이행시 지원 비용이 차감되며 자부담분 증가

● 지원한도액

구분	지역	운영기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한도 (백만원)	유럽	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30	85
	중국	9개월 이상	260	200	110
		3개월 이상	140	-	-
	동남아	6개월 이상	190	120	80
		9개월 이상	240	190	100
	서남아	3개월 이상	130	-	-
		6개월 이상	180	100	70
	중동	9개월 이상	220	170	90
		3개월 이상	120	-	-
아프리카	6개월 이상	170	90	70	
	9개월 이상	200	160	90	

- K-Fresh Zone 지원한도액은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적용기준	3~5매장	6매장 이상	9매장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장소비용	80%	170	90%
	3개월 이상	150	230	200
	6개월 이상	200	290	270
	9개월 이상	260	290	340

지원절차



모집시기

매년 초 모집,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

추진현황 및 계획

관할 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연락처
중국 지역 본부	베이징	중국지역본부, 중국 화북지역, 산둥성, 허난성	E-Mail: beijingat@ator.kr
	상하이	중국 화중, 화중 및 화남지역	E-Mail: shanghaiat@ator.kr
	칭두	중국 서북 및 서남지역	E-Mail: chengduat@ator.kr
	다롄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몽골	E-Mail: dalianat@ator.kr
	홍콩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광둥성	E-Mail: hkcenter@ator.kr
아세안 지역 본부	하노이	아세안지역본부, 베트남북부, 라오스	E-Mail: hanoi@ator.kr
	호치민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 미얀마	E-Mail: atcenterhcmc@ator.kr
	방콕	태국, 미얀마, 인도	E-Mail: bangkok@ator.kr
	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레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	E-Mail: jakarta@ator.kr
미주본부	LA	미국 서부, 신약 및 중남미	E-Mail: losangeles@ator.kr
파리	파리	유럽, 이스라엘	E-Mail: paris@ator.kr
	두바이	중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E-Mail: dubai@ator.kr
	플라디보스토크	러시아	E-Mail: atvlad@ator.kr

담당부서

aT 신시장개척부 박가연 과장(061-931-0993)
서예슬 주임(061-931-0994)

23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지원대상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대상 전략국가 6개 권역 20개국에 농식품 수출희망 업체

권역	최우선 전략국가(7)	차순위 전략국가(13)
신남방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 라오스
신북방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유럽	-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영국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중동아	-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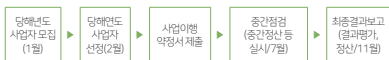
지원내용

선정규모 : 60개사(최우선 전략국가 50, 차순위 전략국가 10)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구분	지원사항
시장개척 사업비	지원내용 : 제품개발, 판촉, 상품화, 브랜딩, 시장조사, 마케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집행액의 50~90% / 성과별 지원비중 차등 / 수산물만 취급하는 업체 제외
뉴 프런티어 FAIR	지원내용 : 시장개척단 구성 및 B2B 상담회(세일즈로드쇼), B2C(소비자체험 홍보마케팅) 사업간 통합마케팅 * 수출상담, 참여비(항공, 숙박 등) 지원 /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추진 가능
청년해외 개척단	지원내용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 추진 청년인턴 지원(aT에서 선발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 교육 실시) * 상황에 따라 해외 출국 불가 시, 수출업체 국내 파견 현장근무 추진
유망품목 품평회	지원내용 : 재한 외국인 품평단 수출품목 마켓테스트 및 홍보 *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추진 가능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내용 : 신종시장 바이어 국내 초청 상담회 지원 *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추진 가능

* 프런티어 참여사의 경우,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패키지 참여 필수

진행절차



모집시기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사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원칙: 우편 접수, 팩, 택배, 방문 접수 불가

담당부서

aT 신시장개척부 오승주 대리(061-931-0966)

24 Global K-Food Fair

해외 주요 수출 거점도시 내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행사를 접목한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네트워크 조성 및 현지 소비자변화 확대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가공수산물 가능, 순수수산물 제외

지원내용 B2B 수출상담회 참여지원
- (사전) ① 온라인 홍보물 제작지원(Agrotrade 연계)
② 해외시장 맞춤조사 지원
- (현장) ① 출장항공비 또는 샘플 운송통관비
② B2C 연계 마켓테스트
- (사후) ① 인플루언서 연계 SNS 마케팅
② 현장계약·MOU 바이어 초청

| 2021년 개최지역 및 시기 |

구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방콕)	호주 (시드니)	프랑스 (파리)	베트남 (호찌민)	러시아 (모스크바)	UAE (두바이)	중국 (중징)
행사성격	B2B/B2C							
행사시기	6월	7월	7월	9월	11월	10월	10월	10월
참가업체 (개사)	35	35	20	20	30	20	20	30

* 개최지역, 시기, 선정규모 등은 향후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선정기준

- 선정규모: 210개사
- 평가항목
 - (계량) 수출역량(수출액, 수출상품 포장표기, 인증서 등)
 - (비계량) 품목적정성 및 시장개척 가능성
- * 가점: 사회적 경제기업, 농식품 상생기업 등
- ** 선정 제외: 수출통합조직(2년차) 미가입 업체, 성과관리시스템에 사후실적 미입력 시 차년도 참가제한

모집시기

2월 말 ~ 3월 초

신청방법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상단메뉴 [K-Food Fair 신청/관리] 접속 → 로그인 → 모집공고 신청
* 업체별 최대 2개 페어까지 참여 가능

담당부서

aT 마케팅지원부 손지희 과장(061-931-0975)
오유진 대리(061-931-0976)
이준영 주임(061-931-0977)

25 해외판촉행사 지원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물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한국식품 취급 수입 바이어, 유통업체
* 기존 국내공모판촉에서 해외 판촉행사를 주관하는 바이어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청시 현지 거래 바이어가 판촉사업 직접 신청

지원내용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온라인시식체험 등 판촉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관련 집행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새로운 유통채널 특성상 상기 이외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aT와 사전 협의
국고지원액의 최소 2배 이상 수입목표액 달성 필요
- 사업의무액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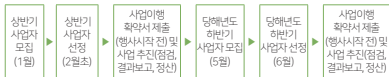
지원기준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80% 지원
- 행사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 수출전략품목(신선,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은 자부담 10%, 200백만원 한도 적용 가능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판촉은 자부담 50%

선정기준

평가항목
- 행사효과 및 품목의 유망성, 행사기획력, 수입업체현황, 행사운영 및 품목적정성
* 농식품 수출 경진대회 수상 지자체 추천업체 제품 판촉은 가점 부여

진행절차



모집시기

매년 1월, 6월

신청방법

global.at.or.kr 모집공고 → 행사권역 aT 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신청주체: 바이어)

담당부서

aT 식품수출부 이승욱 과장(061-931-0742)
박세정 대리(061-931-0744)
조하연 주임(061-931-0746)

26 온라인모바일마케팅 ① 글로벌 B2B 입점지원

글로벌 온라인 B2B 사이트(ex.알리바바닷컴) 내 한국 농식품기업 입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노출빈도를 높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B2B거래활성화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글로벌 온라인 B2B 플랫폼 유료회원제 연회비 및 상품 포스팅 관련 비용 등

- (개별지원) 개별업체별 B2B 플랫폼 계정 가입비, 상품포스팅비, 플랫폼 활용 교육 등 지원

* 수출업체에서 계정 직접 운영 및 관리

- (인큐베이팅) B2B 플랫폼 내 aT 대표 계정을 활용하여, 전문운영사에서 일괄 관리 및 플랫폼 활용 교육 등 지원

● **지원플랫폼 :**

alibaba.com, Amazon.com 등 글로벌 B2B 플랫폼

* 지원 플랫폼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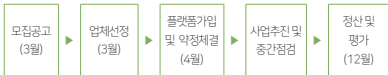
플랫폼 연회비, 상품포스팅 비용 등의 80% 지원(20%자부담)

선정기준

계량·비계량 평가

- 수출역량, 경영안정성, 제품경쟁력, 수출가능성, B2B 플랫폼 활용 계획 등

진행절차



모집시기

매년 3월 경

신청방법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 사업신청] → “글로벌 온라인 B2B 입점지원” 신청 → (첨부파일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별도작성 후 업로드)

담당부서

aT 마케팅지원부 정현철 차장(061-931-0971)
최주희 대리(061-931-0972)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② 온라인 해외직판 지원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온라인몰 직접 진출을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품페이지 번역·제작, 플랫폼 입점지원, 입점교육 등 B2C 플랫폼 입점 전반 지원
- (국내 진출 글로벌 온라인몰 연계 판촉) Shopee, Amazon 등 국내 진출 글로벌 온라인몰과 연계하여 수출기업의 온라인몰 입점 및 판매지원
-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지정운영) 해외온라인몰 직구 사이트 내 한국농식품 판매 전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참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온라인몰 진출 지원
- (aT 해외지사 연계 지원) aT 운영 Tmall 한국관 등과 연계하여 국내 수출농식품 해외온라인몰 직접 입점 지원

● **지원항목:**

- 입점비, 제품상세페이지, 마케팅비, 홍보비 등의 80% 지원(20%자부담)

선정기준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플랫폼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제품 선정

진행절차



모집시기

매년 3월 경

신청방법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 사업신청] → 2020년 글로벌 B2C 입점지원 사업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담당부서

aT 마케팅지원부 정현철 차장(061-931-0971)
최주희 대리(061-931-0972)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27.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발굴 및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 농식품 수출분야의 민간주도형 새로운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지원대상

대중국 전략품목 수출업체 및 현지법인, 품목별 유관협회 및 수출협의회, 현지바이어 등

* 대중국 11대 전략품목: 인삼, 버섯, 유자차, 유제품, 쌀, 쌀가공품, 삼계탕, 포도, 김치, 장류, 전통주, 파프리카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국 시장에 맞는 상품개발·개선 및 신규 유통망 구축, 마케팅 비용의 80~90%

* 사업유형: 상품개발 및 마케팅(1개년, 2개년), 판매망 구축, 판촉 마케팅

- (상품·메뉴 개발) 제품개발(위탁 용역), 시장조사, 포장디자인, 인증등록, 바이어 발굴 등

- (마케팅) 임차비, 장치비, 온·오프라인 홍보비, 판촉인건비, 시식행사비

* 지원품목은 티를 한국식품관과 연계하여 마켓테스트 추진 지원

- 지원비율: 품목별 상이(80~90%)

* 포도, 버섯, 김치, 유자, 인삼, 삼계탕, 파프리카: 90% / 이외품목: 80%

- 지원한도: 개별사업 최대 2억원 한도

- 사업의무액: 품목/사업유형에 따라 약정금액의 0.5~2배 수출의무(CI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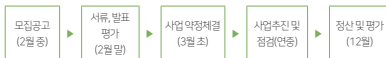
* 판매망 구축, 온오프라인 유형: 1~2배 / 상품개발 마케팅(2년): 0.5배

● 선정방법: 서류평가 → PT평가 →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

-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계량	지원업체 매출액,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비계량	품목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수행능력, 수출연계성

사업별 추진계획



모집시기

매년 2월 경

신청방법

· (국내)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중국) 중국 관할지사에 이메일 등으로 신청

담당부서

aT 마케팅지원부 정현철 차장(061-931-0971)
위장미 주임(061-931-0974)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Part
06

수출 지원 자금용자

- 2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46p
- 2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47p



28.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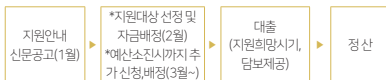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구분	내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신선 수출액이 대출금액의 100% 이상인 업체는 구매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며, 품목 특성상 국산 원료구매 이행이 어려운 업체는 추가 수출의무로 25~75% 대체 가능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자금배정	- 업체별 배정한도 · 중소 중견기업: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업체별 배정금액은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평점을 산출하여 선정 · 신규업체는 계약액 전액으로 평가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배정업체중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의 수출실적의 3배 또는 계약금액 적용 · 계약금액: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예상규모 '21년: 368,082백만원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담당부서 aT 정책금융부 정홍미 차장(061-931-1142)

29.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50천\$ 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함)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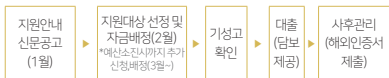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용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의무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지원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
선정기준	최근 2개년 결산서 기준 적격심사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 · 재무구조(30점), 영업실적(30점), 사업타당성(40점)

예산규모

'21년: 4,800백만원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 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 행장 발행), 최근 재무제표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담당부서

aT 정책금융부 정흥미 차장(061-931-1142)

202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Part 07

참고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50p
-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51p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찾아보기는 본 가이드북의 29건의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제도 명칭의 ㄱ-ㄴ-ㄷ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제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페이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5	32p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기업육성부	061-931-0864	12p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수출기반부	061-931-0837	16p
농수산식품수출정보 (KATI)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5	2p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	정책금융부	061-931-1142	46p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마케팅지원부	061-931-0974	44p
바이어 거래알선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6	35p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4	24p
선도유지제 지원	농임산수출부	061-931-0827	18p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기반부	061-931-0835	20p
수출보험지원	농임산수출부	061-931-0827	25p
수출상품화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8	10p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농임산수출부	061-931-0825	9p
수출컨설팅	기업육성부	061-931-0868	3p
수출통합조직 육성	농임산수출부	061-931-0825	8p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선도기업) 육성	신시장개척부	061-931-0966	39p
안전성조사	농임산수출부	061-931-0827	17p
온라인모바일마케팅	마케팅지원부	061-931-0972	42p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	기업육성부	061-931-0863	13p
전문인력양성	농식품유통교육원	031-400-3568	5p
콜드체인구축	신시장개척부	061-931-0964	23p
항공공동물류활성화	신시장개척부	061-931-0963	21p
해외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신시장개척부	061-931-0994	38p
해외공동물류센터	신시장개척부	061-931-0964	22p
해외인증등록지원	기업육성부	061-931-0864	28p
해외판촉행사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6	41p
현지화 지원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2	4p
Global K-Food Fair	마케팅지원부	061-931-0976	40p

[참고]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aT 국내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주 소	연락처
서울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TEL 031-8060-6013 FAX 031-8010-1095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TEL 032-272-3001 FAX 032-712-272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EL 033-920-1544 FAX 033-811-1081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EL 043-902-9526 FAX 043-711-1581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 길 11	TEL 042-389-5019 FAX 042-720-928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TEL 063-904-5874 FAX 063-711-1273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TEL 062-940-7030 FAX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EL 053-218-4898 FAX 053-722-237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TEL 051-947-1086 FAX 051-719-9630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EL 055-274-4813 FAX 055-719-9881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TEL 064-746-9472 FAX 064-800-8960

aT 해외지사

구분	주소	연락처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100102 中國北京市朝陽區廣順北大街33號院 1號樓1單元6層603室)	E-Mail: beijingat@at.or.kr TEL: 86-10-6410-6120~1 FAX: 86-10-6410-6122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200336 中國上海市長寧區崑山關路83號新虹 橋中心大廈3201室)	E-Mail: shanghaiat@at.or.kr TEL: 86-21-3256-6325~7 FAX: 86-21-3256-6328
중국 지역 본부	Unit No.3321, Room 3304, Level 33, Office Tower 2, Yintai Centre, No. 1199, Tianfu Avenue North, Hi-tech Zone, Chengdu, 610000, China (610000 中國成都市高新區天府大道北段1199 號銀泰中心2號寫字樓33樓3304室3321房)	E-Mail: chengdu@at.or.kr TEL: 86-138-8016-1031 FAX: 86-28-6225-7868
홍콩 지사	Room 705, 7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E-Mail: hkatcenter@at.or.kr TEL: 852-2588-1614~16 FAX: 852-2588-1919
다롄 지사	Room 1302, Xiwang Building, NO136 Zhongsha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116001 (大連市中山區中山路136號希望大廈1302號)	E-Mail: dalianat@at.or.kr TEL: 86-411-3960-3361 FAX: 86-411-3960-3362
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Qingdao aT logistics Co., Ltd West Shuangyu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青島市城陽區流亭嶺道雙元路西青島愛特物流 有限公司)	E-Mail: qingdao_logistics@ at.or.kr TEL: 86-532-6696-2229 FAX: 86-532-6696-2181

구 분	주 소	연락처
북 미 지 역 부 문	도쿄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 0004, Japan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OREA CENTER 5F)	E-Mail: tokyo@at.or.kr TEL : 81-3-5367-6656, 6693~94 FAX : 81-3-5367-6657
	오사카 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大阪市中央区安土町1-8-15, 野村不動産大阪B/ D 8F)	E-Mail: osaka@at.or.kr TEL : 81-6-6260-7661 FAX : 81-6-6260-7663
아 세 안 지 역 부 문	하노이 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E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E-Mail: hanoi@at.or.kr TEL : 84-24-6282-2987, 2989 FAX : 84-4-6282-2989
	호치민 지사 CJ Building, Floor 3, 2 Bis 4-6 Le Thanh To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E-Mail: atcenterhcmc@ gmail.com TEL : 84-28-3822-7504 FAX : 02-838-227-503
	자카르 타 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E-Mail: jakarta@at.or.kr TEL : 62-21-2995-9032~3 FAX : 62-21-2995-9034
방콕 지사	#2102 Level 21, Interchange 21, 33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E-Mail: bangkok@at.or.kr TEL : 66-2-611-2627~9 FAX : 66-2611-2626

구분	주소	연락처
미주지역본부	뉴욕 지사 15 East 40th Street Suite 701 New York NY 10016	E-Mail : newyork@at.or.kr TEL : 1-212-889-2561 FAX : 1-212-889-2560
	로스앤 젤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E-Mail : losangeles@at.or.kr TEL : 1-562-809-8810 FAX : 1-562-809-1191
파리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1er é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E-Mail : paris@at.or.kr TEL : 33-1-4108-6076~8 FAX : 33-1-4108-2016
두바이 지사	PO BOX 57528 Office #48, Sunset Mall, Jumeirah Beach Rd, Jumeira 3, Dubai, UAE	E-Mail : dubai@at.or.kr TEL : 971-4-339-2213 FAX : 971-4-456-1155
블라디보스 토크지사	Lotte Hotel Vladivostok 520-522 office, 29, Semenovskaya St., Vladivostok, Russia, 690091	E-Mail : atvladi@at.or.kr TEL : 070-4617-3277

MEMO

MEMO

